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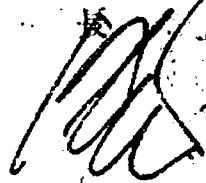
第七

未完結	案件名稱	案號	種類	完結
-----	------	----	----	----

施行上の注意

受接  
權紀  
年 月 日 決  
案立  
昭和七年七月三日 裁

市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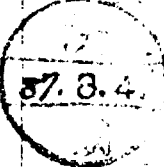


副市長



局長

局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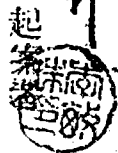


課長

課長



書記



件名 信安運送 許可の申請

서울특별시장

각  
주  
의  
관

귀하

1 1 1 1 1

58

문신치리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유

항상 항상

치리에 있어서 총항의 별약을 기밀히 함

필을 것인바

시정을 명해 항은 명항이 오지응기

성안으로서의 치리상항을 보기에 각급기

차항

전행이 대규에 어긋나지 못이 안코

강령히 함이 하여야 할 국과에 대하여 이를

의행치 안은 세가잇스나 금후 나음각함엔

광별유기하에 본진실시세 안유광의업기

물기하시알

기

사우간소화를 후하듯 전결이카할지라도 그

내용이 중요하고 또한 이예에 속하듯은이

한글서체

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할 것

법령 조례 등 제정으로서 재산처분 관계서류

상급청에 제출할 문서 및 하급행정기관에

대한 지도감독으로서 등은 반드시 관계주와

와 합의를 예에 행할 것

청규 제 51 조에 명시한 바와 같치

대외적으로 중요하고 인정되는 요소를 반드시

내부구과장 (O) (O) (O) 을 기치 시장질 재를 밝은

후 시행할 것

④ 정서한 인의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주우과장

인인 (행안) 을 적어 우우로써 구안서위 체계를

가치도 높여야 하므로 불구하고 이를 행

회향무인어노 함후에는 총우과문서기에  
회향무인어 총우과장의 임인을 밧은후  
반공하도록 할나